

학생의 권리

종교 및 종교 활동

시민권법에서는 K-12 공립 학교 내 차별 및 차별적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한 개인이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불공평 또는 불평등 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의미합니다. 워싱턴 주 법에 따라 **종교 및 신념**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됩니다.¹

차별적 부당행위는 **보호대상**에 근거한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협박, 소문을 퍼뜨리거나 욕을 하는 행위, 경멸성 농담, 신체적 폭력, 신체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위협하거나 치욕스러운 기타 행위 등 다양한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 금지

공립 학교는 학생의 종교적 배경, 신앙, 의복 또는 표현을 포함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이 차별 또는 부당행위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종교적 편의

공립 학교는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의 종교적 신념 또는 관련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어려움이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안전을 저해하거나 다른 학생 또는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편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종교적인 의식 또는 활동으로 인한 결석 인정
- 학습목표가 비슷한 대체 과제 제공
- 학생의 종교적 신념 또는 활동에 위배되는 복장 규정 또는 교복 규정 면제. 예를 들어, 학교측은 학생이 머리 덮개, 장신구, 종교적 물건, 염주를 착용하거나 특정 길이의 머리 또는 턱수염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차별성 부당 행위

종교를 근거로 한 부당행위는 워싱턴 주 공립 학교에서 금지되어있는 일종의 차별 행위입니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차별성 부당행위를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직원 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공식적인 항의가 없었다라도 차별성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거나 해당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한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부당 행위를 통해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교직원은 해당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을 즉시 없애야 합니다.

학교측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학교에서 차별적 부당행위가 해당 학생에게 미친 모든 영향을 처리하고 **또한**
2.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적 부당행위에 대한 상세 정보, 지역구 방침 및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자료는 [\[insert websi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¹ 웹터 28A.642 RCW,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 웹터 28A.640 RCW,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 웹터 49.60 RCW,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



학생의 권리

종교 및 종교 활동

학교 내 종교적인 표현

미 헌법 수정 제 1 조에 따르면 학생은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행동이 허용됩니다.

- 학교 내에서, 숙제 또는 학교 과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
- 쉬는시간, 점심시간 또는 학업 전/후 와 같은 비 수업시간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 자료를 탐구
- 타 학생들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과 종교에 대해 논하거나 기도를 함

종교에 대해 가르침

미국 헌법에 따르면 공립 학교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무교보다 신앙을 가지도록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중립적, 객관적, 균형잡힌 가르침

공립 학교는 역사 및 사회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과 같이 교육적인 목적에 한해 세계의 종교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관련 자료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편견없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립 학교에서는 종교 주제와 관련한 음악, 예술, 드라마 또는 문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음악 및 음악 역사에 대한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종교를 권장하기 위해 관련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립 학교에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치를 포함한 공립 학교 직원이 기도를 유도하거나 학생들에게 기도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을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려사항 또는 이의 해결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학교장 또는 해당 교육구의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과 협의를 통해 차별에 대한 귀하의 우려사항 또는 이의사항을 처리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차별 및 부당행위를 이해할 때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또한
- 학교장 또는 504 전담관에게 **귀하가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합니다.

담당 교육구의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의 연락처는 www.k12.wa.us/Equity/ContactList.asp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식 민원 제기- 차별 및 차별적 부당행위

귀 자녀가 차별 또는 부당행위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평등 및 시민권 부서 웹사이트 www.k12.wa.us/Equity/Families 에서 공식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절차를 준수합니다.
-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 사무소(Office for Civil Rights) 연락처: 206-607-1600 (TDD: 1-800-877-8339) 또는 웹사이트 www.ed.gov/ocr.



학생의 권리 종교 및 종교 활동

-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 연락처: 1-800-233-3247(TTY: 1-800-300-7525), 또는 웹사이트 www.hum.wa.gov

자세히 알아보기 질문하기 도움 받기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평등 및 시민권 담당부
360-725-6162 | TTY: 360-664-3631 | equity@k12.wa.us | www.k12.wa.us/equity

해당 교육구의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에 대한 정보는
www.k12.wa.us/Equity/ContactList.aspx 를 방문해 주십시오.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상세 정보, 지역구 방침 및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자료는
www.k12.wa.us/Equit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주정부 및 연방 시민권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정보는 참조용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OSPI는 성별, 인종, 신념, 종교, 피부색, 국적, 나이, 제향군 명예 제대 또는 군대 상태, 성별 표현 또는 정체성 등의 성적 기호,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존재 여부, 장애인의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평등한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차별 문제에 대한 질문과 불만 사항은 형평성 및 시민권 사무국 (Equity and Civil Rights Director), (360) 725-6162 또는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 로 문의해 주십시오.

